

질 의 · 서 면 답 변 서

질 의	이 수 현 의 원	답 변	평창군수(종합민원실장)
회 의	계62회 평창군의회(정기회) 계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p>< 질의요지 ></p> <p>○ '98농어촌오지노선 버스손실보상금 요청내역 및 집행내역</p>			

< 답 변 >



" 별첨 "

지출결의서

증재 호							
계 장	재무과장	경리관	198년도 회계	계	지출권		
세출과목							
발의		(인)	장	경회개발	발의	19	(인)
원인행위 부기재		(인)	관	교통장비	지출부기재	19	(인)
			항	교통설비관리			
계약		(인)	세항	교통이회결집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19	(인)
검수		(인)	세세항	경삼회 결비	지급명령 번호	제 호	
			목	301-12			

금오전주백철삼이안회결집

₩ 59,821,000 -

적요	경삼회 결비 소형차량 구입	거래은행 계좌번호	출입
채주	주소 (주)백철삼이안회결집 임원도키 3명 상호		
영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주)백철삼이안회결집 임원도키 3명 (인)		
주관과			
추	 		

청 구 서

☞ 청 구 액 : 일금 사천팔백칠십구만육천원정. (₩48,796,000)

상기 금액을 '98년도 상반기 능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청구합니다.

1998 년 7 월 15 일.

평 창 운 수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임 문 호



☞ 청구은행및 계좌번호

☞ 청구은행 : 농협 중앙회

계좌번호 : 257 - 01 - 061473

예 금 주 : 평창운수 임문호

청 구 서

—금 수백만원 원정 (회계. 032.0000-)

상기금액을 98상반기 농어촌 버스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1998. 7. 18.

업 체 명 : 대영운수주식회사

대 표 자 : 정 준 수



계좌번호 : (농협)219 - 01 - 183674

청 구 서

금 액 : ₩ 514,000 원

상기 금액을 98년도 상반기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으로 신청합니다.

1998. 7. 11.

원주사 개운동 451-4

태창운수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석



계좌번호 : (농협) 209 - 01 - 284081

예 금 주 : 태창운수(주)

청 구 서

금 액 : 일백사십팔만일천원정(W1,481,000)

상기 금액을 98년도 상반기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1998. 7. 15

동신운수주식회
대표이사 심상



입금 계좌번호

농협, 011-17-000136

예금주: 동신운수(주)

"천혜자원 우리평창 함께가꿈 미래의 땅"
평 창 군

우232 - 800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 2 / 전화 (0374) 30- 2356 / 전송 33-6356
 처리부서 : 상공과 운수계(종합민원실), 담당계장 : 이봉현, 담당자 : 한상호

문서번호 상공 91121 - 2614

시행일자 1998. 7. 21.

발음 내부 결재

참조

취급		군	수	
보존	5년			
부군수	762명	한상호 1		
과 장	[인]	재무과장 [인]		
계 장	[인]	경리계장 [인]		
기안	한상호 [인]			협조

제목 '98 상반기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급결의

'98년도 상반기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
 코자 결의합니다.

1. 예 산 액 : 금일억이천만원정 (₩ 120,000,000-)
2. 금회지출액 : 금오천구백팔십이만일천원정 (₩ 59,821,000-)
3. 산 출 내 역 :
 - 평창운수 166,538,600원 x 0.293 = 48,796,000 원
 - 대영운수 30,818,400원 x 0.293 = 9,030,000 원
 - 동신운수 5,054,400원 x 0.293 = 1,481,000 원
 - 태창운수 1,753,740원 x 0.293 = 514,000 원
 - 계 — 204,165,140원 x 0.293 = 59,821,000 원
4. 잔 액 : 금육천일십칠만구천원정 (₩ 60,179,000-)
5. 지 급 처 : (주)평창운수 임문호 외 3인
6. 예 산 과 목 : 경제개발, 교통관리, 교통행정관리, 교통기획행정, 경상적경비.
 (301 - 12). 글.

평 창 군 수


'98농어촌버스 운행결손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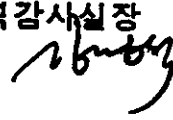
			군 수
계 장	과 장	부군수	
이영진	이영진	이영진	이영진

평창군

예산계장



기획감사실장



평

창

군

손실보상금 지급계획

— '98 농어촌버스 운행결손 관련 —

□ 손실보상 배경

최근 자가용차량의 증가 및 주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농어촌버스 이용객이 감소되어 오지,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농어촌버스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어 일부 오지, 비수익노선의 운행기피등 농어촌버스 파행운행이 예상되어 비수익노선 운행결손에 따른 손실보상을 실시함으로써 버스운행 중단을 방지하고 업체의 경영난 해소로 주민에 대한 교통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함.

□ 지원근거

- 육운진흥법 제 5조, 동법시행령 제 6,7,8조
- 지방재정법 제 14조 및 동법시행령 제 24조

□ 업체별 운행노선

업 체	계		벽 지 노 선 (도지원노선)		일반 비수익 (군지원노선)		비 고
	노선수	운행거리 (km)	노선수	운행거리 (km)	노선수	운행거리 (km)	
계	39	383.7	17	85.3	22	298.4	
평창운수	33	335.0	14	65.2	19	269.8	
등신운수 (태장)	3	18.0	2	10.1	1	7.9	원주 - 계촌
대영운수	3	30.7	1	10.0	2	20.7	평창 - 영월 미탄 - 영월

□ '98년도 지원계획

○ 지원대상업체 : 본군 관내를 운행하는 농어촌버스 업체 (4개 업체)

- 평창운수, 대영운수, 동신운수, 태창운수

○ '98년도 예산액 ————— 120,000 천원

- 교통량조사 결과에 의한 운행결손 예상액의 28.5 %

※ '98. 제1회 추경예산 계상신청 — 100,000 천원

○ 교통량조사결과 업체별 결손액

- 교통량 조사 : '98. 3. 20 ~ 3. 24 (5일간)

(단위 : 천원)

업체명	조사대상 노선수	지원대상 노선수	총결손액	비고
합계	22	19	420,653	
평창운수	19	16	342,656	※ '97년 대비
대영운수	2	2	64,160	141,226 천원
동신운수 (태창*)	1	1	13,837	증가

※ 노선별 결손액 집계표 : 불임

【 운행결손액 산출방법 】 ————— 육운진흥법

-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98. 3. 20 ~ 3. 24) 결과에 따라 업체별 운행결손액

산출

- 대상노선 : 1회 km당 평균 승차인원 14인 미만인 노선

- 산출방법

· 거리(1km)당 운임요금 x 운행거리(km) x (14인-1km당평균승차인원) x 운행회수
x 365 일

· 거리(1km)당 운임요금 — 건교부 지교 91122 - 569('97. 12. 26)호 및 강원도
교행 91122 - 2020('97. 12. 26)호 관련

· 포장 — 62.90원, 비포장 - 70.05원

○ 보상금 지급방법

- 교통량 조사결과 노선별 평균승차인원 통보 : 군 ⇒ 운수업체

- 손실보상금 청구 : 운수업체 (운영에 따른 실제 손실액)

- 보상금 결정 : 업체 청구액중 확보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체별 일정 비율로
지급 (년 2회)

- 보상금 지급시기

- 1회 : '98년 7월중 ('98. 1. 1 ~ 6. 30까지의 운행 결손액)
- 2회 : '99년 1월중 ('98. 7. 1 ~ 12. 31까지의 운행 결손액)

- 보상금 청구시 제출서류(육운진흥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

- ① 손실보상금 청구서 1부
- ② 운행사실 기록부 1부
- ③ 손실액산출 명세서 1부

운행결손액 집계표(총괄)

(단위 : 천원)

업 체 명	노 선 수		운행거리(km)			실 계 운행회수 (1일)	운행결손액 (천 원)	비 고
	조사대상	지원대상	계	포 장	비포장			
합 계	22	19	298.4	286.1	12.3	82.5	420,653	
평창운수 (주)	19	16	269.8	260.8	9.0	65.5	342,656	
대영운수 (주)	2	2	20.7	20.7	-	14	64,160	
동신운수 (태창운수)	1	1	7.9	4.6	3.3	3	13,837	

※ 지원대상 : 1km당 평균수송인원 14인 미만인 노선